



교육부

수신 수신처 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강화에 따른 학원 및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 관련 근거

-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0883(2020.8.15.)
-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1148(2020.8.18.)
-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8.28.)
- 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2160(2020.8.28.)

2.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가 지속적인 확산 추세에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28일 정례회의를 통해 수도권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에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니,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당 시설 및 지역주민 등에 이를 안내·하여 집합금지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각 지자체는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관련 시설 및 단체에 공문 등으로 안내
-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행안부)는 중앙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이 행 상황 점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 시설 :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같은 시간에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로 신고된 교습소는 제외
- 적용 기간
 -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 2020년 8.31(월). 0시 ~ 9.6(일) 24시
 - 실내체육시설 : 2020년 8.30(일). 0시 ~ 9.6(일) 24시
- 조치 내용 : 집합금지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붙임. 수도권 방역 강화에 따른 학원 및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 끝.

수신자 각실과 외 4



주무관 기안08/28
권동주

보건사무관 검토08/28
정희권

학생건강정책 과장
조명연

협조자

시행 학생건강정책과-7320 (2020-08-28) 접수 숭의여자대학교-4554 (2020-08-31)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 www.moe.go.kr

전화번호 044-203-6548 팩스번호 044-203-6438 / two51991@moe.go.kr / 공개

수도권 방역 강화에 따른 학원 및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5.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학원, 독서실, 스타디카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② (자자체) 관내 사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③ (자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우반 시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시 솔heim상 청구

1.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2. 적용 대상

- (학원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상 학원(10인 이상, 300인 미만) 및 독서실, 스타디카페* [참고1]

* '스타디카페'는 업종이 명확하지 않아 자자체별로 운영형태로 구분 필요

- (실내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상 체육시설(법제3조, 시행령제2조별표1) 중 실내에서 운영되는 시설 [참고2]

- 별표1에 명시된 시설 이외에도 자자체에서 대상 시설 추가 가능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0883(2020.8.1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1148(2020.8.18)에 따라 시행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행정 조치 중 학원(300인 미만),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내용은 본 조치로 대체
- ※ 지자체에서 기준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3. 적용 기간

※ 적용 시점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학원·독서실·스타디카페) 2020년 8월 31일(월) 0시 ~ 9월 6일(일) 24시
- (실내체육시설) 2020년 8월 30일(일) 0시 ~ 9월 6일(일) 24시

4. 법적 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총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참고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육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독서실의 정의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번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 외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나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염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임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구 분	체 육 시 설 종 류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케이트볼장, 풋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퀴리스케이트장, 배구장, 베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봄슬레이장, 냉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퀘시장, 스키장, 승마장, 셀메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암궁장, 억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히키장, 헬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 위에 명시된 시설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집행금지 대상 시설 추가 가능

4. "독서실"이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

- ② 「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육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명)을 말한다.

참고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별표1